채무부존재확인의소등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대법원
사건번호	2018두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채무부존재확인의소등
원 고	□□□□□□ 주식회사	피 고	인천광역시
판결선고일	2018. 6. 28. 심리불속행기각(원고패소)	비 고	(1심)인천지방법원 2015구합○○○○○ 2017. 5. 11. 원고일부승소 (2심)서울고등법원 2017누○○○○○ 2018. 2. 8. 원고패소
사건개요	원고는 피고의 2007 인천■■초 외 20교 신축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에 의거 2009. 실시협약을 맺은 당사자로, 피고가 인천■■초 외 7교의 내진구조가 미반영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,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내진구조 반영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없었으며, 원고는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시공한 것인 바, 피고 측이 주장하는 내진보강공사를 할 의무가 없고(채무부존재확인), 2009. 10. 7.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인천■■초 등 20개교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실시협약에 기한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상고를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❍ 청구취지 -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천■■초 등 20개교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(BTL)에 관하여 체결된 2009. 10. 7.자 실시협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■■초, A고, B여고, C초, D초, E초, F초, G초의 체육관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 - 원고가 2009. 10. 7.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'인천■■초 등 20개교 증축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실시협약에 기한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한다. ❍ 항소취지 -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❍ 상고취지 -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		
판결이유	❍ **원고의 내진보강공사 시공의무 존재(2심 판결 인정)** - 원고는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 체결 이후, 내진설계 반영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피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, -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협약을 토대로 작성한 시행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일 뿐이므로, -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시행협약에 의해 확정되므로 내진보강공사의 시공의무 있음.		
결 론	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,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